

마포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2012.10.22.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10월 9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2년 10월 16일
- 다. 상정일자 : 제172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12년 10월 22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가. 제안이유

동 의견청취안은 홍대 앞(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95번지 일대) 일원에 추진 중인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에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 이에 대한 진흥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지구현황

- 위 치 : 마포구 서교동 395번지 홍대앞 일대(동교동, 합정동, 상수동 일부)
- 면 적 : 746,994㎡

(2) 권장업종

- 주업종 : (73201)인테리어디자인, (73202)제품디자인, (73203)시각디자인, (73209)기타 전문디자인업, (73302)상업용 사진촬영업, (71393)광고물작성업
- 보조업종 : (58111)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58112)만화출판업, (58119)기타 서적 출판업, (58122)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3)정기 광고 간행물 발행업, (58190)기타 인쇄물 출판업

(3) 추진경위

- '07.11. 7. :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운영계획 방침(시장)
- '08. 6.19. :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추진계획 방침(구청장)
- '08. 9.25. :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신청(구→서울시)
- '09. 5.20. : 서울시 진흥계획 수립 지침 마련 및 시달(서울시→구)
- '09. 6. 3. :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수립용역 착수
- '09. 8.13. : 마포디자인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주민 공람(열람) 공고
- '09. 9.10. : 마포디자인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구의회 의견청취
- '10. 1.28. :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고시(서울시고시 제2010-21호)
- '11.10.19. :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안) 조건부 승인(시)
- '12. 9.11 :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추진계획 시달(서울시→구)
- '12.10. 8. :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변경(안) 수립(구청장)
- '12.10.10. :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변경(안) 공람(열람) 공고(공고기간 : 2012.10.10.~2012.10.24)

(4) 진흥계획의 주요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추진 방식	- 시 주도 사업 추진	- 민간·자치구 주도 사업추진
진흥지구 운영	- 관 주도 운영	- 지역산업공동체 중심 운영 · 산·학·관·공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의사결정 기능을 하고, 협의회에 집행부(1국 2부)를 설치하여 앵커 시설 등 사업 운영
도시계획 행위 완화	- 권장업종으로 사용될 면적이 건물 연면적 50%이상인 경우 용적률 등 적용	- 권장업종으로 사용될 면적이 건물 연면적 20%이상인 경우 용적률 등 차등 적용
자금 지원	- 권장업종 건설업자(건물 신축 및 증개축) 및 권장업종 영위자 중소기업	- 권장업자 영위자(임차보증금, 경영 안정자금) 우선 지원 ※ 건설업자는 별도 지침 마련 시행
세제혜택 (취득세, 재산세)	- 취득세(50%), 재산세(3년간 50%) 감면	- 취득세, 재산세 감면은 사·구 재정 형편에 따라 잠정 보류

3. 검토보고 (전문위원 명금길)

마포구 서교동, 동교동을 중심으로 산업 군을 형성하고 있는 디자인·출판 산업을 중점 지원·관리하여 산업 집적화 촉진을 유도하고 차세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산업정책과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적으로는 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중심 계획으로서 도시 관리 계획과 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지원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방안, 진흥지구의 비전 및 목표, 추진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고 투자 및 기업 유치, 고용촉진 및 인력양성 방안, 연구개발 및 혁신역량 강화 방안, 협력 및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산업 인프라 향상 방안 등 권장 업종에 대한 지원 사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동 변경 의견청취안은 마포구의 장기적 발전계획으로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비 민간·시·구 공동부담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계획이 미흡한바 이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계획수립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